

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·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1762
----------	------

2024년 4월 25일
환경수자원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4년 4월 3일, 이은림 의원
- 나. 회부일자: 2024년 4월 8일
- 다. 상정일자: 제323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
(2024년 4월 25일 상정·의결(원안 가결)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이은림 의원)

- 가. 제안이유
- 생계유지 등을 이유로 폐지를 줍는 65세 이상 노인이 4만 2천명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(2024년 폐지 수집 노인 실태조사, 보건복지부)가 나올 정도로 재활용품 수집·관리인의 생활 여건이 어려운 상황임.
 - 이에 서울시는 재활용품 수집·관리인의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 등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실행하지 않고 있음.

- 따라서 생활이 어려운 재활용품 수집·관리인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매년 수립하는 수집·관리인 지원계획에 대한 실적평가와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실행력을 제고하고자 함.
- 또한, 수집·관리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안전과 건강보호,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건강관리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지원계획의 실행력 담보를 위해 실적평가를 의무화하고, 추진실적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함(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).
- 수집·관리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안전과 건강 보호,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건강관리 지원 등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을 규정함(안 제7조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
- 다. 기타: 신·구조문대비표

4. 검토보고 요지

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집·관리인 지원계획에 대한 실적평가와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실행력을 제고하고, 수집·관리인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 교육 및 건강관리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- 현행 조례는 재활용품 수집·관리인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, 실적평가 시행 및 평가 결과 반영,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등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.

따라서 안 제3조와 같이 실적평가를 시행하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지원계획의 실행력 제고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.

- 안 제7조는 재활용품 수집·관리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건강관리를 위한 예산지원 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상당수 수집·관리인이 고령인 점을 고려할 때,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.

<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>

현행	개정안
제3조(지원계획의 수립시행) (생략) <신 설> <신 설>	제3조(지원계획의 수립시행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②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 ③ 시장은 전년도 지원계획의 추진실적을 2월말까지 서울특별시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제7조 (비용의 지원) (생략)	제7조 (비용의 지원) ① 시장은 수집관리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자치구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1. 야광조끼, 반사경 등의 안전장비 지급 2.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관리인에 대한 수집보상금 지원 3. 안전과 건강보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건강관리 지원 ②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·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·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,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은 전년도 지원계획의 추진실적을 2월말까지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비용의 지원) ① 시장은 수집·관리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자치구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- 1. 야광조끼, 반사경 등의 안전장비 지급
- 2.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관리인에 대한 수집보상금 지원
- 3. 안전과 건강보호,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건강관리 지원

②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)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3조(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 <p>②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,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시장은 전년도 지원계획의 추진 실적을 2월말까지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
<p>제7조(비용의 지원) ① 시장은 구청장이 수집·관리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야광조끼, 반사경 등의 안전장비를 지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관리인에게 수집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수집·관리인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</p>	<p>제7조(비용의 지원) ① 시장은 수집·관리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자치구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야광조끼, 반사경 등의 안전장비 지급 2.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관리인에 대한 수집보상금 지원 3. 안전과 건강보호,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건강관리 지원 <p>②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.</p>